

공고

●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-103호

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
『전기통신사업법』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**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2025년 11월 25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- 제목 :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- 근거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04조(과태료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,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(압류의 요건 등)
- 공시송달 대상

연번	고지번호	체납자명	실명번호	최초부과일	체납액	고지주소
1	0162250191980000312	(주)와이에스케이네트웍스	110111-8718*** 262-87-02***	2025.3.23.	1,949,500	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2*, 2**호(문정동)

- 공시송달 내용 :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(공시)송달하였고,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**함을 알려드립니다.
- 공고기간 : 2025. 11. 25. ~ 2025. 12. 8. (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)
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(☎02-2680-17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